

 신안산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규정번호 2-1-25 제정일자 2015. 3. 2.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대외협력처
---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본 대학교 교직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통할한다. <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자 출석)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 조(주관 등) 회의는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대외협력처 직원으로 한다. <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부정행위 등의 제보·접수) ① 제보자는 대외협력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②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대외협력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예비조사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6조(본 조사 착수·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4인 이상의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외부 인사를 위촉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보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교직원으로 한다.

제18조(출석·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0조(이의제기·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1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2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의신청·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 조치

제24조(연구지원기관에 대한 제출) ①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관련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② 총장은 징계요청 및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대외협력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장 기타 사항

제27조(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